

미국의 양돈자조금 운영사례

1. 머리말

미 국양돈 산업도 과잉생산과 소비축소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정부의 가격지지 정책은 우리보다 잘 하고 있었지만 늘어나는 생산량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 농민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구책이 나왔고, 이것이 자조금제도이다.



조 광 호 교수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우리는 미국보다 가격지지정책도 뒤떨어지고 생산구도도 낙후된데다 수입개방까지 되어 있어 과잉생산시 가격파동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누구에게 의존만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 양돈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양돈농가들이 사육두수를 자율 조절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고, 농민 스스로 자금을 모아 소비촉진 활동을 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우리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자조금제도의 실태를 간단히 소개하여 우리의 양돈 자조금제도 정착에 참고하고자 한다.

2 미국자조금제의 배경과 진행과정

미국의 자조금은 '54년 양돈생산자협회(NSGC : National Swine Growers Council)를 조직하여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과 소비자교육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 '64년 NSGC가 돈육생산자협회(NPPC : National Pork Producer Council)로 개편되면서 본격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벌리다가, '67년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 아이오아주를

자조금은 미국내에서 돼지를 생산 판매하는 양돈업자와 돼지, 돼지고기, 돈육가공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로부터 모금한다.

'99년에는 4,220억 달러의 자조금을 모금하였으며, 이중 수입업자로부터 360억 달러를 모금하였다. 국내 생산 돼지는 도축장에서 징수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징수하였다.

시작으로 자조금제를 실시하였다. 이 당시는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였기 때문에, 자금모금이 원활치 못하여 예산과 계획이 확실하지 못하였으며, 무임승차자에 대한 반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때 의무부과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85년에 양돈 자조금법(The Pork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 돼지고기 소비촉진, 연구, 소비자정보법)을 제정하여 의무자조금에 대한 뒷받침을 마련하였고 '86년부터 법적인 자조금제를 실시하였다.

지난해(2000. 8. 18 - 9. 21)에는 양돈자조금의 계속 실시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금년 1월 미 농무성이 양돈 자조금을 계속 실시토록 통보하였고, 2년후 자조금 실시여부에 대해 다시 투표토록 하였다.

자조금은 '74년 이전에 비육돈 출하시 두당 5센트씩을 거출하다가 '74년부터는 두당 10센트씩 모금하였고, '86년 이후에는 판매가액의 0.45%(판매액 100달러당 45센트)를 거출하고 있었다. 자조금은 미국내에서 돼지를 생산 판매하는 양돈업자와 돼지, 돼지고기, 돈육가공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로부터 모금한다. '99년에는 4,220억 달러의 자조금을 모금하였으며, 이중 수입업자로부터 360억 달러를 모금하였다. 국내 생산 돼지는 도축장에서 징수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징수하였다.

3. 양돈 자조금제의 목적과 주요사업

양돈 자조금 제도는 시장에서의 지위 향상과 돈육과 돈육제품의 시장개선 및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촉진활동과 연구사업, 생산자교육 그리고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촉진 활동으로는 TV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홍보전략으로는 근래 닭고기(White Meat)의 소비가 확대되고,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하자, 돼지고기에 대해 '또 다른 백색고기(The Other White Meat)'라는 캠페인을 벌려 효과를 보았다.

연구사업으로는 양돈산업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 즉 생산, 가공, 영양, 신상품개발, 유통 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생산농민은 연구사업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이 분야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었다.

생산자 교육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생산자에게 전달해 주는 사업으로 각종세미나, 강좌, 비디오, 방송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양돈 자조금 제도는 돈육생산자 대표단(NPPDB : National Pork Producers Delegate Body)과 돈육위원회(NPB : National Pork Board)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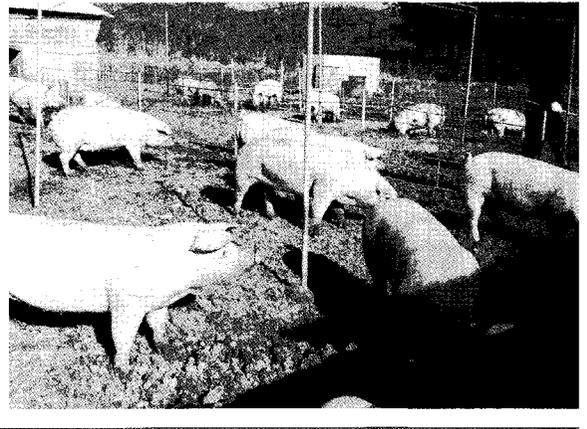
교육하는 사업이다.

소비자 정보(consumer information)는 소비자들에게 양돈과 돈육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전문가, 교사 등에게 돈육 산업과 돼지고기의 영양적 가치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촉진과도 관련된다. 양돈자조금의 사용내역('97년)을 보면, 소비자 광고에 23.0%, 소매 판매촉진에 9.1%, 해외 시장개척에 7.2%, 생산·기술연구에 12.6%, 돼지고기 정보에 6.2%, 돼지건강 및 돈육 안정성을 위해 4.6%, 신상품개발에 2.0%를 사용하였다. 즉 소비홍보와 관련된 사업에 63%, 연구 및 교육사업에 23%, 소비자 정보에 14%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자금이 소비촉진활동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조직 및 운영

양돈 자조금 제도는 돈육생산자 대표단(NPPDB : National Pork Producers Delegate Body)과 돈육위원회(NPB : National Pork Board)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돈육생산자 대표단은 농무성 장관에 의해 임명된 양돈 농민 및 돼지 및 돈육 수입업자로 구성되며,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결기구이다. 대표단은 각주의 돈육생산자 협회에서 추천된(각 주에 2명 이상) 생산자와 수입업자로서 현재 175명의 생산자와 5명의 수입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자조금의 부과율과 각주



에 대한 자조금 할당율을 결정하며 돈육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대표단의 모든 의견은 과반수 이상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돈육위원회는 돈육생산자 대표단의 추천에 의해 농무성 장관에 의해 임명된 12개주 이상을 대표하는 생산자와 수입업자로 구성되며, 현재 15명의 위원이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최초 위원의 1/3은 1년, 다른 1/3은 2년 그리고 나머지 1/3은 3년을 임기로 하여, 매년 1/3씩의 위원을 교체토록 함으로서 다수의 양돈가가 교대로 참여토록 하였다.

돈육위원회는 일종의 집행부로서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수립하고, 소비촉진, 연구 등과 관련된 외부와의 계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은 농무성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돈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규칙 제정과 경비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업무 및 회계에 대해 농무성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연차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농무성에 제출해야 하고, 년 1회이상 사업의 활동내용을

자조금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에서 지원한다.

5. 자조금에 대한 평가와 투표

의무적 자조금의 징수는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부담금이다. 따라서 자조금을 부담하는 자는 이 자금이 구성원의 수익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자조금 사업이 기대에 어긋나면 투표에서 부결시키기 때문에 돈육 생산자대표단과 돈육위원회는 자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구성원에게 사업내용, 생산자정보, 사업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TV 등 광고 내용과 지역별 광고시간 등도 안내하며 생산자의 여론을 수집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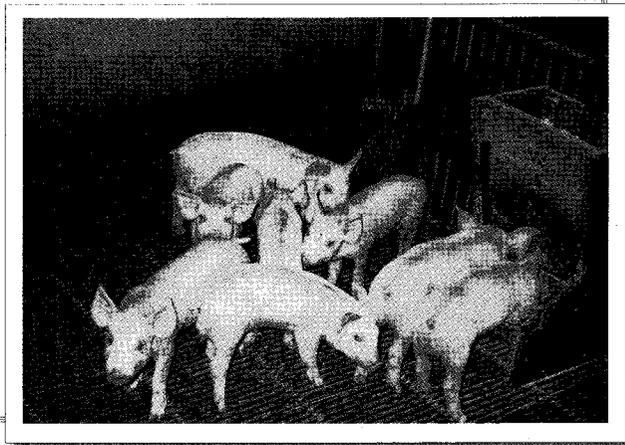
자조금에 대한 평가는 제3기관인 대학이나 농무성 산하 경제연구소(Economy Research Service: ERS)에서 담당한다. 여기서 소비자의 기호도 조사, 소비자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신제품 개발과 투자, 생산 및 유통구조 변화, 생산자의 반응 등을 조사하며 효과를 분석한다. 최근에는 텍사스 A&M 대학 농업경제학과에서 양돈 자조금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자조금 1달러당 5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조금의 실시여부에 대한 투표는 매 2년마다 실시하며,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15%이상이 청원하면 미농무성은 1년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조금의 의무적 징수는 공공적 성격을 띄므로 정부에서 용도대로 집행되도록 감독한다. 따라서 정부의 감독비용, 평가비용, 보고서 발간비, 투표관련비용 등은 정

6. 양돈 자조금의 문제

자조금사업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첫째 자조금사업에 의해 계속적으로 가격이 보장되면 과잉공급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촉진 활동으로 가격이 폭락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양돈업에 신규투자를 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잉공급량을 소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요확대계획을 세워야 하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얼마나 소비촉진 활동을 해야 하는 가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돼지고기 소비확대로 대체재인 쇠고기와 닭고기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대체재의 수요확대 프로그램을 유발하며 이들과 경쟁관계를 갖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 경쟁상품의 수요가 자조금 이전 상태로 환원되면서 자조금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돈 자조금은 외국산과의 차별화에 의한 국내산 소비확대에 중점을 두고 대체재와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추진



해야 한다. 또한 양돈 자조금의 추진 주체들
 간에 업무 중복 또는 협조관계에서 문제가 있
 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간의 업무한계 설정
 이 명확해야 한다.

7. 맺음말

양돈업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즉 국내에서는 높은 생산비와 구제역 등 질병
 뿐 아니라 환경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외국에서는 값싼 돼지고기가 계속 수입
 되고 있으니, 이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럴 때 정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의 하나가 자조금제이다. 우리 양돈
 인이 조금씩 돈을 모아 외국산에 대응하는 흥
 보도 해야 하고, 우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품질을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TO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수급조절이나 가격지지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양돈인이 뭉치고 힘을 합쳐 우
 리가 살길을 찾아야 한다. 자조금제는 우리 양
 돈인이 나아가야 할 길 중의 중요한 것이므로,
 자조금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
 야 하다. **양돈**

생석회 · 소석회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총란 및 병원균 살균
- 유기질 분해촉진
- 산성 토양 개량 (pH안정)

영월 석회 공업사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
 전화: (033)372-5837,5618 / (033)372-5296,6878
 FAX: (033)372-5889 야간: (033)372-5293